



PwC 베트남 뉴스레터

이전가격에 관한 시행령 20/2025/NĐ-CP가
이제 확정되어 발행되었습니다.

www.pwc.com/vn



At a glance..

이전 가격에 관한 시행령 20/2025/NDH-CP(이하 "시행령 20")는 2025년 2월 10일에 발표되었으며 2024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.

본 뉴스레터에서는 시행령 20의 중요한 요소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.



신규 이전가격 시행령

시행령 20에 따른 변화

기업은 특히 이전가격 목적으로 특수관계자로 간주되는 신용기관이 부과하는 이자에 관해 시행령 132의 이자 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. 2025년 2월 10일, 재무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는 시행령 20호를 발표했습니다.

- 동 시행령은 신용기관에 관한 법률의 변경 사항에 맞추기 위해 특수관계자의 정의를 확대합니다. 이제 특수관계자에는 신규 법률에 따라 신용기관의 계열사가 포함됩니다.
- 제3자 대출 기관 또는 보증 기관을 특수관계자로 분류하는 것을 제한합니다. 대출 기관, 보증 기관 및 신용 기관은 차용 기업의 "관리, 통제, 자본 출자 또는 투자"에 참여하지 않는 한 특수관계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. 이 개정안은 이전에 EBITDA를 기준으로 상업 은행으로부터의 차입만으로 특수관계자 거래로 분류되어, 공제 가능한 이자 비용에 대한 제한을 겪는 것에 대한 납세자의 우려를 해결합니다.

- 시행령 132 하, 해당 연도의 순 이자 비용/EBITDA 비율이 30% 미만인 경우 손금 불산입 이자 비용은 다음 과세 연도로 이월되어 공제될 수 있습니다. 차입 기준을 통한 특수관계자 정의에 대한 시행령 20의 변경 사항은 2024년부터 적용됩니다. 따라서 회사가 차입하는 신용 기관은 2024년 이전에는 특수관계자로 간주되었지만 2024년 이후에는 더 이상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이런 경우 2024년 이전에 발생한 손금 불산입 이자비용을 2024년 이후로 이월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. 시행령 20호는 이와 관련하여 과도기적 지침으로, 2023년 말 기준 비공제 이자 비용은 남은 연도에 공제 청구를 위해 균등하게 공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


신규 이전가격 시행령

- 시행령 20호는 세무 당국의 요청 시 관련 개인 및 신용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베트남 중앙은행의 책임을 확대합니다.
- 최종 시행령에는 납세자가 향후 이전가격 신고 양식을 제출할 때 사용해야 하는 시행령 20에 따른 변경 사항을 통합한 새로운 버전의 이전가격 신고서 부록 I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


Contact us

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,
구체적인 자문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
HCMC Office



박준형 – 호치민 사무실
Senior Manager, Korean CPA
+84 (28) 3823 0796 Ext. 4611
park.junhyung@pwc.com

Ha Noi Office



김민걸 – 하노이 사무실
Manager, Korean CPA
+84 (24) 3946 2246 Ext. 1011
kim.mingul@pwc.com



Judith Henry
Partner
judith.henry@pwc.com



Dinh Thi Quynh Van
Partner
dinh.quynh.van@pwc.com



Nguyen Le Nhan Hoa
Director
nguyen.le.nhan.hoa@pwc.com



Ngo Thanh Tin
Director
ngo.thanh.tin@pwc.com



pwc

www.pwc.com/vn

